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목 차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지니먼트계약서)	15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31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41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49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56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62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75
대관계약서	81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86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96
[부록] 2019 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108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 (이하 '작가')와 __ 화랑 / 갤러리(이하 '화랑')는 20__ . __ . 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 판매위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작가가 화랑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화랑에게 작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작가와 화랑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화랑이 전시,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④ 화랑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필수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6개월로 한다.

일반적으로 화랑이 작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전시 종료 후 6개월에서 1년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였다. 화랑은 전시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으므로 전시기간 후 일정기간 동안 화랑에게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잠재적 구매자는 전시 이후에도 전시 화랑에 구매문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 기간 동안 화랑이 작품을 보관하는 것은 작품의 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작가가 다른 전시를 계획하는 등으로 전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품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 제4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예)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계약지역은 화랑이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는 예시이므로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대한민국'을 계약지역으로 정하는 경우 화랑은 대한민국 내에서 전시, 위탁판매, 대여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화랑이 계약지역을 넘어서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수 제5조(작품의 전시)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_화랑 / 갤러리
 4. 전시내용 : _____
 5. 전시유형 : _____
- ② 작가와 화랑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 ③ 작가와 화랑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 ④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전시명에는 가급적 국문명과 영문명을 함께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1항 제3호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전시실’ 등과 같이 세부적인 공간을 특정할 수 있다.

제1항 제4호 전시내용에는 전시의 주제,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항 제5호 전시유형에는 신작/구작 전시, 개인전/단체전 등과 같은 각 전시의 유형을 서술할 수 있다.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에 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시 시작 전 어느 시점에는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2항은 전시작품의 목록,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전시 관련 홍보, 전시 관련 부대행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일정 기간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전시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2항 제2호 중 전시작품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하여는 소리·조명 등에 의한 작품 사이의 간섭, 관람객의 동선, 관람객이 작품을 만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협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은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상 재생이나 퍼포먼스의 간격·횟수 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제5항은 전시시간에 전시장소가 닫혀있거나, 전시시간에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 필수 제6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 화랑은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전시작품 외의 작품도 판매할 수 있다.
- ②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④ 화랑은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화랑은 원칙적으로 전시작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는다. 다만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전시작품 외의 작품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3항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작가와 화랑 중 누가 부담할지,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작품의 판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항은 화랑이 분쟁의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작가가 대작(代作)을 한 경우나 작품이 통상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작가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필수 제7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화랑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⑤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 ② 화랑은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은행명 : _____
- 계좌번호 : _____
- 계좌주 : _____
- ④ 화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_____
 2. 판매일시 _____
 3. 판매대금 _____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_____
 5. 정산금 산정 내역 _____

제1항은 작가와 화랑이 서로 협의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통상 미술계에서는 화랑이 전시·판매·홍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작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50:50의 분배비율을 주로 사용한다.

제2항은, 작품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판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져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 시마다 정산을 하여야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의 ‘판매대금’은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할인율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필수 제8조(작품의 대여)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작품에 관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여받는 자의 목적이 단순한 감상에서부터 전시 및 위탁판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작품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제1항은 작품의 대여를 위해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대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반환, 판매대금의 정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가의 동의가 없는 한 대여기간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2항은, 유상 대여의 경우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이 사안 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여받는 자가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가 해당 전시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통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제3항에서 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제4항은 작품을 대여받는 자가 위탁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작가의 분배금액은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9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와 화랑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운송한다.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항은 작가가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작품 중에는 설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설치 전의 미완성 작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의 제공 시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전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시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제공 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화랑은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2항에 따른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작가의 작품 인도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화랑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3항과 관련하여,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필수 제10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2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이 규정하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 제11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①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화랑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3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작가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그 외의 이유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작가가, 후자는 화랑이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작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유에는 화랑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 등이 있을 것이다.

필수 제12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원칙적으로 화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까지 화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화랑이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3조(보험) ①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의 경우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통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 제14조(작품의 저작권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권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권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저작권재산권자인 작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작품의 이용허락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2항은 화랑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하기 위해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작가가 해당 이용허락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통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화랑이 작가의 허락 없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거나 작품을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항과 제4항에서 화랑이 작가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의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화랑이 작품의 사진이 게재된 수첩, 머그컵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5항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작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미술작품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제6항은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다.

화랑이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작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작품의 사진·영상 등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창작적 부분에 관하여는 화랑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7항은 작가가 작품을 촬영한 사진·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랑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 실제로는 작가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자신의 작품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화랑에 대해 화랑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화랑은 이와 같은 사용에 동의할 것이다. 이 때 작가는 사진·영상을 사용하면서 화랑을 해당 사진·영상의 저작권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필수 제15조(저작권권 등) ①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화랑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가는 작품의 원본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통상 작품의 근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가 표시되는데, 제1항은 이러한 미술계의 관례를 반영하여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복제물 또는 작품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2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1) 본 계약의 당사자가 화랑이므로 사진·영상의 저작권자 역시 화랑일 것을 전제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진작가 등 화랑이 아닌 제3자가 사진·영상의 저작권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작가는 그 제3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은 화랑이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4항은 화랑이 전시하기로 결정된 작품을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작가의 저작권은 수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작가는 물론이고 화랑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대로 제3자가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3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품 판매 시 제7조 제4항에 따라 정산내역서와 근거자료가 제공되므로, 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① 화랑은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품의 아트페어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화랑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홍보 기회가 아트페어임을 고려하여, 작가가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도록 화랑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제1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화랑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2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지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²⁾ 또는 기타 불가항력³⁾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⁴⁾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2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3)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필수 제24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⁵⁾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25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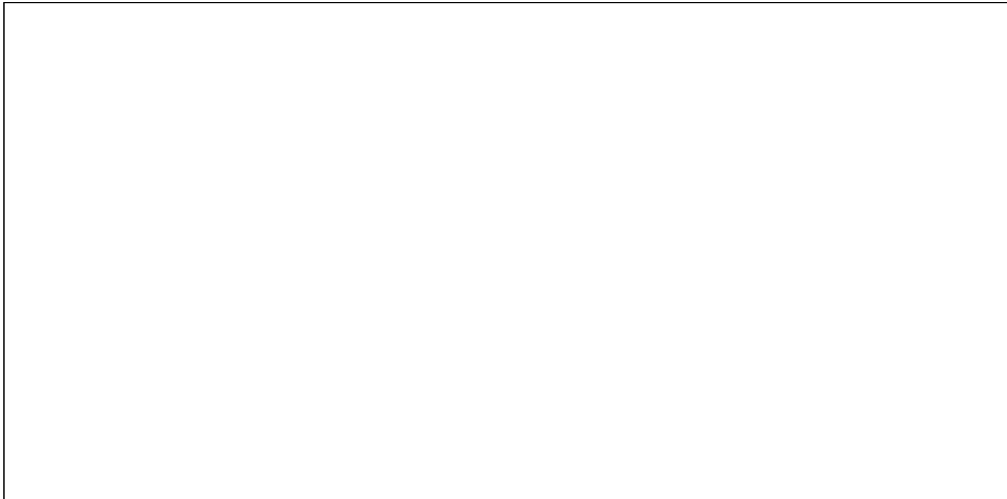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5)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작 품 보 증 서

작품사진



작 가 명	
작 품 명	
제 작 연 도	
재 료	
크 기	
참 고 사 항	

위 작품은 본 작가가 창작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작가 _____ (서명 또는 인)

작 품 인 수 증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비고
작 품 목 록						
보관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인수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귀하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작가 __ (이하 '작가')와 __ 화랑 / 갤러리(이하 '화랑')는 20__ . __ . __. 아래와 같이 전속계약(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한다.

작가가 화랑에 전속되어 작품 활동과 작품 판매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과거 미술 산업이 호황일 때 전속계약이 다수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전속계약의 수요가 다시 생겨날 수 있고, 화랑이 단순히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역할을 넘어서 작가를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표준전속계약서를 개발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화랑에게 작품의 전시, 위탁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화랑이 작가에게 작품 활동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작가는 계약기간 동안 화랑에 전속되어 활동하므로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를 장르, 시기, 프로젝트, 신작 등의 기준에 따라 한정할 수도 있다.

필수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⑤ 화랑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⑥ 화랑은 전속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작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필수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__ . __ . __.부터 20__ . __ . __.까지 (☞만 5년) 로 한다.

- ② 계약기간 중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가가 정상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작가와 화랑 모두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다.

제1항은 계약기간을 5년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작가가 전시를 준비하는 데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속기간 중 2회의 전시를 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만 5년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 전속계약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 다른 계약조건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2항은 작가가 자신의 책임으로 정상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연장일수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계약기간이 당연히 연장되지 않도록 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작가와 화랑의 입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는 예컨대 작가가 부주의로 낙상하여 손을 다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작가와 화랑 모두 전속계약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 그 계약 관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일정 시간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에 제3항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까지 작가와 화랑이 모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계약의 종료를 원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계약기간은 2년이나 3년 등으로 단축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3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 5년으로 비교적 장기라는 점과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수 제5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계약지역은 화랑이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는 예시이므로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대한민국’을 계약지역으로 정하는 경우 화랑은 대한민국 내에서 전시, 위탁판매, 대여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화랑이 계약지역을 넘어서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수 제6조(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전속적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작가에게 매월 ○일 금 ○○○원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계좌주 : _____

화랑이 작가로부터 전속적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작가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이른바 ‘전속금’에 해당하는데, 작가가 작품의 판매 상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전속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지급 방법에 관해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화랑이 작가에게 전속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전속금의 지급에 추가하여 작업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필수 제7조(작품의 전시)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회 이상 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부여한다.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에 관해서는 각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작가와 화랑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③ 작가와 화랑은 전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화랑이 부담한다.

④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⑤ 작가와 화랑은 전4항의 전시와는 구분되는 상설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전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속계약 관계에서 화랑이 작가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제1항 제1문의 ‘○회 이상’ 부분에는 예를 들어 ‘2회 이상’ 또는 ‘2년에 1회 이상’ 등과 같이 전시 횟수나 전시 간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전시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전시 횟수나 전시 간격은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전시 횟수는 작가의 단독 전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단체 전시를 하는 경우의 전시 횟수 산정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항 제2문은, 비록 현실적으로 전속계약에 각 개별 전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에 관한 사항을 전시 시작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전시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작품의 창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나아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에 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시 시작 전 어느 시점에는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2항은 전시작품의 목록,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전시 관련 홍보, 전시 관련 부대행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일정 기간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전시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제2항 제2호 중 전시작품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하여는 소리·조명 등에 의한 작품 사이의 간섭, 관람객의 동선, 관람객이 작품을 만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협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은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상 재생이나 퍼포먼스의 간격·횟수 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제5항은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상설전시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속계약 체결 시부터 상설전시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전시작품 수, 전시장소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전속계약에 명시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6항은 전시시간에 전시장소가 닫혀있거나, 전시시간에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8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

②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화랑은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화랑은 원칙적으로 전시작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는다.

제3항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작가와 화랑 중 누가 부담할지,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작품의 판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항은 화랑이 분쟁의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작가가 대작(代作)을 한 경우나 작품이 통상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작가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필수 제9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화랑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예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 ② 화랑은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 ③ 전항의 금원은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④ 화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제1항은 작가와 화랑이 서로 협의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통상 미술계에서는 화랑이 전시·판매·홍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작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50:50의 분배비율을 주로 사용한다.

제2항은, 작품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판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져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 시마다 정산을 하여야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의 ‘판매대금’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할인율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 필수 제10조(작품의 대여)**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작품에 관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여받는 자의 목적이 단순한 감상에서부터 전시 및 위탁판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작품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제1항은 작품의 대여를 위해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대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반환, 판매대금의 정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가의 동의가 없는 한 대여기간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2항은, 유상 대여의 경우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이 사안 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여받는 자가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가 해당 전시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통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제3항에서 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제4항은 작품을 대여받는 자가 위탁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작가의 분배금액은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11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1항은 작가가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작품 중에는 설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설치 전의 미완성 작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의 제공 시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전시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시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제공 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화랑은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2항에 따른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작가의 작품 인도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화랑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3항은 전속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운송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필수 제12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4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품은 전시, 위탁판매 및 대여 상황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이 규정하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화랑이 작품 모두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작가가 작품을 보관하되 화랑이 위탁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항은 보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품을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13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①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화랑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3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작가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그 외의 이유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작가가, 후자는 화랑이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작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유에는 화랑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 등이 있을 것이다.

필수 제14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원칙적으로 화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게까지 화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화랑이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5조(보험) ①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의 경우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통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 제16조(작품의 저작권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권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권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저작권재산권자인 작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작품의 이용허락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2항은 화랑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하기 위해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작가가 해당 이용허락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통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화랑이 작가의 허락 없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거나 작품을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항과 제4항에서 화랑이 작가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의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화랑이 작품의 사진이 게재된 수첩, 머그컵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5항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작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미술작품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제6항은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다.

화랑이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작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작품의 사진·영상 등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창작적 부분에 관하여는 화랑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7항은 작가가 작품을 촬영한 사진·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랑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⁶⁾ 실제로는 작가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자신의 작품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화랑에 대해 화랑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화랑은 이와 같은 사용에 동의할 것이다. 이 때 작가는 사진·영상을 사용하면서 화랑을 해당 사진·영상의 저작권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필수 제17조(저작권인격권 등) ① 작가는 화랑을 통해 작품을 공표한다. 작가와 화랑은 작품의 구체적인 공표시기와 공표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④ 화랑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작가는 작품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제1항은 본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고려하여 작가가 공표를 결정할 경우 화랑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원본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통상 작품의 근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가 표시되는데, 제2항은 이러한 미술계의 관례를 반영하여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복제물 또는 작품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6) 본 계약의 당사자가 화랑이므로 사진·영상의 저작권자 역시 화랑일 것을 전제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진작가 등 화랑이 아닌 제3자가 사진·영상의 저작권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작가는 그 제3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3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제4항은 화랑이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5항은 화랑이 전시하기로 결정된 작품을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18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작가의 저작권은 수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작가는 물론이고 화랑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대로 제3자가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19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8조 제3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품 판매 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산내역서와 근거자료가 제공되므로, 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20조(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 등) ① 화랑은 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품의 아트페어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화랑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홍보 기회가 아트페어임을 고려하여, 작가가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도록 화랑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제1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화랑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23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⁷⁾ 또는 기타 불가항력⁸⁾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⁹⁾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25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화랑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계약기간 도중에 본

7)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8)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9)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작가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6조 제1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총 금액의 ㉠1.5배/2배를 위약벌로 화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규정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화랑은 전속적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작가에게 전속금을 지급하므로, 작가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랑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항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에 관하여 규정하되, 다만 위약벌 금액은 계약기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26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¹⁰⁾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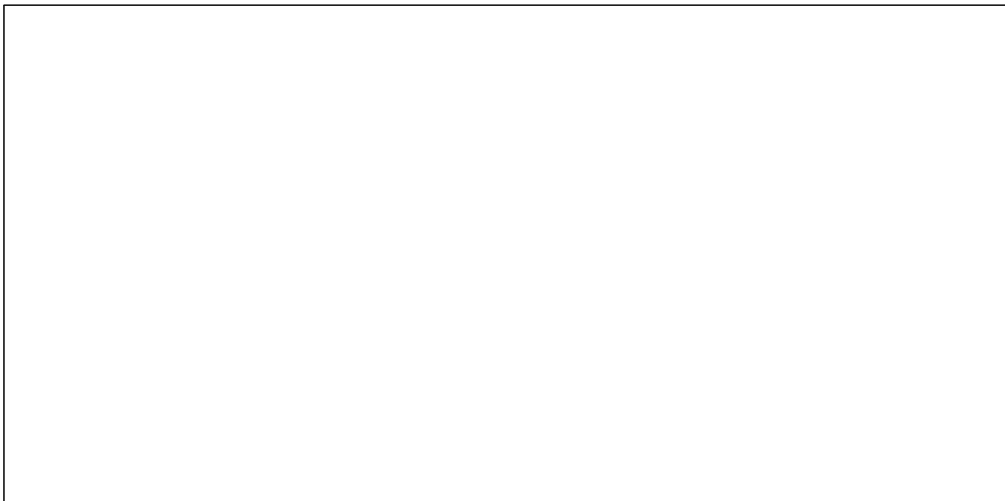
필수 제27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10)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작 품 보 증 서

작품사진



작 가 명	
작 품 명	
제 작 연 도	
재 료	
크 기	
참 고 사 항	

위 작품은 본 작가가 창작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작가 _____ (서명 또는 인)

작 품 인 수 증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비고
작 품 목 록						
보관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인수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님 귀하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 (이하 '작가')와 ____ (이하 '판매자')는 20___. ___. _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작가가 화랑,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에게 작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판매 권한을 판매자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작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다.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 제3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계약지역은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는 예시이므로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대한민국'을 계약지역으로 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작품 홍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판매자가 계약지역을 넘어서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수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을 판매한다. 작가와 판매자는 작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작품 목록이 기재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다.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1				
2				
3				

②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판매자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작품목록에 기재된 작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는다.

제3항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을,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작가와 판매자 중 누가 부담할지,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작품의 판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항은 판매자가 분쟁의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작가가 대작(代作)을 한 경우나 작품이 통상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작가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판매자는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90:10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판매자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계좌주 : _____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는 전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작가로부터 작품의 판매만을 위탁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항은 작가와 판매자의 분배비율을 90:10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작품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판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져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 시마다 정산을 하여야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의 ‘판매대금’은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할인을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 필수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합의한 시점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1항은 작가가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그 준비 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판매자는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2항에 따른 판매자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작가의 작품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판매자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3항과 관련하여,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 필수 제7조(작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이 규정하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필수 제8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판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판매자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2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작가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그 외의 이유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작가가, 후자는 판매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작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유에는 판매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 등이 있을 것이다.

필수 제9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만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0조(보험) ①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의 경우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통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 제11조(저작권재산권 등) ① 작품의 저작권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판매자는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미술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제2항은 판매자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12조(저작인격권 등) ① 판매자는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의 홍보 등에 있어서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협의한다.
② 판매자는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가는 작품의 원본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작품의 홍보물에는 작품의 사진·영상 등 복제물이 게재될 것인데, 제1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판매자가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필수 제13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필수 제14조(확인 및 보증) 작가는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필수 제15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판매자는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4조 제3항의 판매가격
7. 보관, 판매 여부
8.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② 판매자는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품 판매 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정산내역서와 근거자료가 제공되므로, 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6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① 판매자는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작가와 협의하여 작품의 아트페어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판매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홍보 기회가 아트페어임을 고려하여, 작가가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필수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¹¹⁾ 또는 기타 불가항력¹²⁾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11)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12)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¹³⁾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21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¹⁴⁾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13)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4)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22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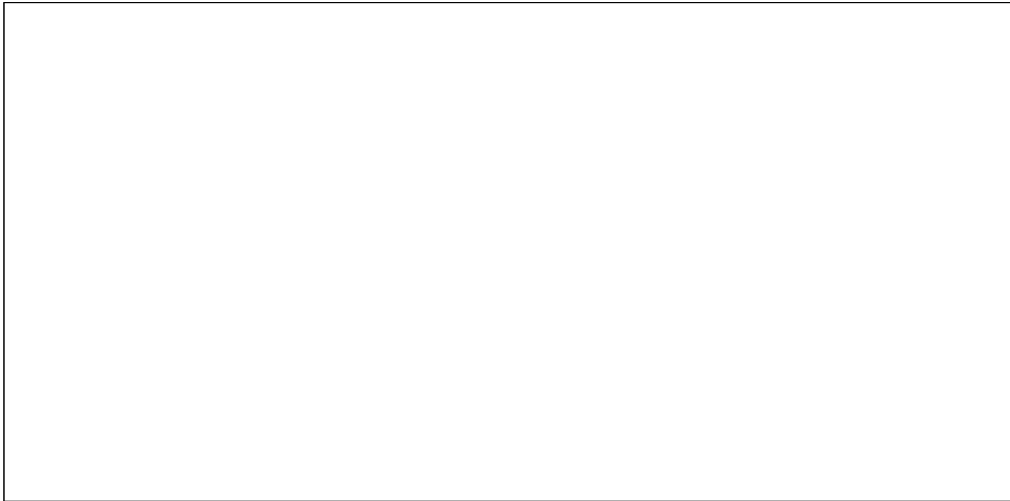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3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작 품 보 증 서

작품사진



작 가 명	
작 품 명	
제 작 연 도	
재 료	
크 기	
참 고 사 항	

위 작품은 본 작가가 창작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작가 _____ (서명 또는 인)

작 품 인 수 증

작 품 목 록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비고
보관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인수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_____님 귀하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____(이하 '위탁자')와 ____ (이하 '판매자')는 20___. __. 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작가 이외에 작품의 소장자 등이 화랑,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에게 작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소유자인 위탁자가 판매 권한을 판매자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작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다.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 제3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예)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계약지역은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는 예시이므로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대한민국'을 계약지역으로 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작품 홍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판매자가 계약지역을 넘어서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수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을 판매한다. 위탁자와 판매자는 작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작품 목록이 기재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다.

	작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1					
2					
3					

② 위탁자는 제1항 기재 작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그 판매를 위탁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③ 위탁자는 작가의 작품보증서 등 작품의 진위에 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원본을 제5조에 따른 작품 인도 시 교부한다.

- ④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⑤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작품목록에 기재된 작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는다.

제4항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작가와 화랑 중 누가 부담할지,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작품의 판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5항은 판매자가 분쟁의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위탁자가 작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등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위탁자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90:10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판매자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계좌주 : _____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는 전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작품의 판매만을 위탁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항은 위탁자와 판매자의 분배비율을 90:10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작품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판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져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 시마다 정산을 하여야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의 ‘판매대금’은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할인을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필수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위탁자는 [20〇〇. 〇〇. 〇〇.까지] 작품을 []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작품인수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1항은 위탁자가 작품을 판매자와 협의한 일시·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판매자는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2항에 따른 판매자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위탁자의 작품 인도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판매자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3항과 관련하여,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필수 제7조(작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이 규정하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 제8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위탁자는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위탁자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2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그 외의 이유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위탁자가, 후자는 판매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작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유에는 판매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 등이 있을 것이다.

- 필수 제9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만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 제10조(보험)** ①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보험 가입 즉시 위탁자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의 경우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통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 제11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작가명
3. 제작연도
4. 작품의 재료 및 크기
5. 작품사진
6. 인도일시
7. 제4조 제4항의 판매가격
8. 보관, 판매 여부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② 판매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품 판매 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정산내역서와 근거자료가 제공되므로, 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필수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¹⁵⁾ 또는 기타 불가항력¹⁶⁾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16)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¹⁷⁾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4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5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¹⁸⁾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17)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8)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필수 제16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작 품 인 수 증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비고
작 품 목 록						
보관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인수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님 귀하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 ____ (이하 '매수인')과 위탁판매인 ____ (이하 '위탁판매인')은 20___. __. 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화랑이나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 등의 위탁판매인이 작가 등 권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다. '작가 등 권리자'에는 작가, 작가로부터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유족 등 상속인, 작가로부터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 등 권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화랑, 기타 미술품판매업자 등 위탁판매인이 매수인에게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매매 대상 작품) 위탁판매인은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 ○점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작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1					
2					
3					

일반적으로 작품 매매 시 여러 점을 한 번에 매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목록을 표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작품은 작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로 특정하여 매매 대상 작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필수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① 매수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작품 매매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작품 인도 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위탁판매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작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매매 대상 작품의 특징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 실무에 따라 잔금 수령과 작품 인도는 양 당사자가 만나 동시이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작품을 인도받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필수 제4조(작품의 인도) 위탁판매인은 20○○. ○○. ○○.까지 []로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작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위탁판매인은 당사자들이 협의한 장소로 작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인이 인도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 경우 해당 비용 역시 매매대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대금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운송료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수 제5조(작품의 관리) ① 작품이 제4조에서 정한 인도일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작품 인도 후 작품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작가로 하여금 작품을 유지, 보수하게 하여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¹⁹⁾에 따라, 제1항은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판매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작품의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멸실 등에 따른 위험을 위탁판매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제2항은 위탁판매인이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이 적정하게 설치, 전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작가는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작품이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이를 임의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품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작가가 담당하도록 하되, 위탁판매인은 작가로부터 작품 판매를 위탁받은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작가를 통해 작품이 적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9)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필수 제6조(확인 및 보증)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자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작가가 창작한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 서류를 첨부한다.

③ 매수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감정 외에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인도 시점 이전까지 별도로 지정한 감정인을 대동하여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수 있으며, 위탁판매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감정 결과 작품이 위작이라는 의견이 나올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인된 감정 의견에 의해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작품이 위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작품의 위작 여부는 일반적으로 미술품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확인 및 보증이 필요하다. 이에 제2항은 위탁판매인이 작품 인도 시 작가로부터 받은 진품 확인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3항은 만일 매수인이 작가의 확인서나 감정인의 감정 서류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감정을 요청할 경우 위탁판매인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의 상태·품질 등에 대하여 구매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매매 목적물의 상태·품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술작품의 경우 일반 구매자는 거래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진위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반면, 위탁판매인은 상대적으로 미술작품의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용이하므로, 제4항은 위탁판매인으로 하여금 작품의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데에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사례 1 : 연합뉴스-국립현대미술관 “경매서 산 이성자 그림 한 점 위작”】

국립현대미술관이 2018. 10. 10. 국내 경매에서 구입해 소장하던 이성자 작가의 작품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의 자체조사 결과 위작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을 위작으로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그림은 폐기 또는 매각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3년 경매에서 이 그림을 3천774만원(수수료 포함)에 구매하였는데,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해당 그림을 접한 이성자 유족 측이 위작 의혹을 처음 제기했으며, 이에 현대미술관은 경매사가 제출한 작품확인서를 확인해 진작이라고 1차 진단했지만, 2018년 3월~7월 진행된 '이성자 회고전' 준비과정에서 현대미술관 내부에서 다시 위작 의혹이 제기됐고, 미술관은 재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올 초 위작으로 결론내렸다.

【사례 2 : 한국일보-미술계, 잇을 만하면 ‘위작 스캔들’】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쓴 책 '미술품 감정학'을 보면 영국 경매회사에서 판매되는 미술품의 15%, 인상파 화가 작품의 최소한 10%를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해외라고 위작이 없지는 않지만 국내는 사정이 심각하다. 유통되는 그림 중 위작 비율이 이보다 훨씬 많고, 갈수록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수준

떨어지는 한두 점이 나온다면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안 되지만 최근에는 전문화된 조직이 거의 (원작과)구별이 안 될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다”고 말했다. 한국미술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03년 25%였던 위작 비율은 이중섭·박수근 위작 사건이 벌어진 2006년, 박수근 ‘빨래터’ 진위 논쟁이 벌어진 2008년에 각각 19%, 21%로 뚝 떨어졌다가 2009년 24%, 2010년 27%, 2011년 34%, 2012년 3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까지 10년간 평가원이 감정 의뢰 받은 5,130점 중 26%(1,329점)가 위작 판정을 받았다.

- 필수 제7조(저작권)**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매수인은 전항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경우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변조, 개작, 훼손 등 작가의 인격권을 해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품을 철거할 경우에도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저작권자가 작품에 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작품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저작권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작품을 인도받는다 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뿐 작품의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여전히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가지며(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다만 양수인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저작권법 제11조).

그런데 이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됨으로써 미술작품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미술작품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술작품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2항은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매수인의 전시권을 보장하였다.

한편 제3항과 제4항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작가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철거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매수인은 작품의 소유자로서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5항은 작가 등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써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침해배제조치를

하기 위해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위탁판매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위탁판매인이 매수인에게 작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²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제1항은 위탁판매인이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당사자는 천재지변²¹⁾ 또는 기타 불가항력²²⁾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²³⁾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20)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1)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22)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3)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이 점에서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하는 해지와 구별된다. 또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1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²⁴⁾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2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24)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3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 __ (이하 '매수인')과 작가 __ (이하 '작가')는 20__ . __ . 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작가가 화랑이나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 등의 위탁판매인 없이 '직접'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미술작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매도인인 작가가 매수인에게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작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매매 대상 작품) 작가는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 ○점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1				
2				
3				

일반적으로 작품 매매 시 여러 점을 한 번에 매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목록을 표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작품은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로 특정하여 매매 대상 작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필수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① 매수인은 작가에게 작품 매매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작품 인도 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작가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작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매매 대상 작품의 특징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 실무에 따라 잔금 수령과 작품 인도는 양 당사자가 만나 동시이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작품을 인도받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필수 제4조(작품의 인도) 작가는 2000. 00. 00.까지 []로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작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작가는 당사자들이 협의한 장소로 작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인도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 경우 해당 비용 역시 매매대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대금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운송료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수 제5조(작품의 관리) ① 작품이 제4조에서 정한 인도일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작가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작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작가는 제4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후 작품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작품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²⁵⁾에 따라, 제1항은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작가가 계약금을 반환하고 작품의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멸실 등에 따른 위험을 작가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제2항은 작가가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이 적정하게 설치, 전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작가는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작품이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이를 임의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가는 매수인이 작품의 소유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작품의 유지, 보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6조(확인 및 보증) ① 작가는 작품을 스스로 창작하였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작가는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작품의 위작 여부는 일반적으로 미술품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에 관한

25)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사자 간의 확인 및 보증이 필요하다. 다만 본 계약은 위탁매매계약과 달리 작가 스스로가 매도인으로서 작품을 매도하는 계약이므로, 제1항은 작가가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점’과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보증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작품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제2항은 작가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진품 확인서 등 문서를 교부하게 함으로써 향후 작품의 진정성에 대한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사례 1 : 연합뉴스-국립현대미술관 “경매서 산 이성자 그림 한 점 위작”】

국립현대미술관이 2018. 10. 10. 국내 경매에서 구입해 소장하던 이성자 작가의 작품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의 자체조사 결과 위작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을 위작으로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그림은 폐기 또는 매각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3년 경매에서 이 그림을 3천774만원(수수료 포함)에 구매하였는데,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해당 그림을 접한 이성자 유족 측이 위작 의혹을 처음 제기했으며, 이에 현대미술관은 경매사가 제출한 작품확인서를 확인해 진작이라고 1차 진단했지만, 2018년 3월~7월 진행된 ‘이성자 회고전’ 준비과정에서 현대미술관 내부에서 다시 위작 의혹이 제기됐고, 미술관은 재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올 초 위작으로 결론내렸다.

【사례 2 : 한국일보-미술계, 잇을 만하면 ‘위작 스캔들’】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쓴 책 ‘미술품 감정학’을 보면 영국 경매회사에서 판매되는 미술품의 15%, 인상파 화가 작품의 최소한 10%를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해외라고 위작이 없지는 않지만 국내는 사정이 심각하다. 유통되는 그림 중 위작 비율이 이보다 훨씬 많고, 갈수록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수준 떨어지는 한두 점이 나온다면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안 되지만 최근에는 전문화된 조직이 거의 (원작과)구별이 안 될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다”고 말했다. 한국미술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03년 25%였던 위작 비율은 이준섭·박수근 위작 사건이 벌어진 2006년, 박수근 ‘빨래터’ 진위 논쟁이 벌어진 2008년에 각각 19%, 21%로 뚝 떨어졌다가 2009년 24%, 2010년 27%, 2011년 34%, 2012년 3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까지 10년간 평가원이 감정 의뢰 받은 5,130점 중 26%(1,329점)가 위작 판정을 받았다.

필수 제7조(저작권)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전항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경우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변조, 개작, 훼손 등 작가의 인격권을 해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품을 철거할 경우에도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작가가 작품에 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작품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작가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작품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뿐 작품의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여전히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가지며(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다만 양수인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저작권법 제11조).

그런데 이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됨으로써 미술작품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미술작품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술작품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2항은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매수인의 전시권을 보장하였다.

한편 제3항과 제4항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작가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철거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매수인은 작품의 소유자로서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5항은 작가가 저작권의 행사로써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침해배제조치를 하기 위해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9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작가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작가가 매수인에게 작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²⁶⁾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제1항은 작가가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작가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당사자는 천재지변²⁷⁾ 또는 기타 불가항력²⁸⁾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²⁹⁾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이 점에서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하는 해지와 구별된다. 또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7)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28)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9)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필수 제11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2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³⁰⁾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0)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작가 ____ (이하 '작가')와 ____ 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이하 '전시기관')은 20___. __. 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작가가 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 등 비상업적 전시공간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비상업적 전시공간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전시기관이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전시기관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필수 제3조(작품의 전시)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___. __. __. ~ 20___. __. __. 오전 __시 __분 ~ 오후 __시 __분. 다만, 매주 __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 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

4. 전시내용 :

5. 전시유형 :

② 작가는 예상 제작비 등을 기재한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③ 작가와 전시기관은 전시 시작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⑤ 작가는 전시작품의 목록, 인도시기 등 작품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시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작품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⑥ 작가와 전시기관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⑦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⑧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전시명에는 가급적 국문명과 영문명을 함께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1항 제3호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전시실’ 등과 같이 세부적인 공간을 특정할 수 있다.

제1항 제4호 전시내용에는 전시의 주제,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항 제5호 전시유형에는 신작/구작 전시, 개인전/단체전 등과 같은 각 전시의 유형을 서술할 수 있다.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에 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시 시작 전 어느 시점에는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3항은 전시작품의 목록,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전시 관련 홍보, 전시 관련 부대행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1개월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전시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 가능하나, 전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항 제2호 중 전시작품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하여는 소리·조명 등에 의한 작품 사이의 간섭, 관람객의 동선, 관람객이 작품을 만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협의될 수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은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상 재생이나 퍼포먼스의 간격·횟수 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기관의 사정으로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 관련 주요 사항이 변동되거나, 작가의 사정으로 전시작품의 목록, 인도시기 등 작품 관련 주요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 전시시작일이 연기되거나, 작품의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전시기관이나 작가가 원래 이행하기로 한 대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작가와 전시기관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변동된 상황에 맞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가와 전시기관 모두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서로 성실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4항, 제5항에서 서면으로 통보할 것과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8항은 전시시간에 전시장소가 닫혀있거나, 전시시간에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4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작가는 1일당 제12조 제1항 기재 금액의 1% 를 전시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1항은 작가가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작품 중에는 설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설치 전의 미완성 작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의 제공 시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전시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품의 제공이 늦어지면 전시가 지연되거나 애초 기획과는 다른 전시가 진행되는 등 전시기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은 작품의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 작가가 1일당 전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작가비의 1%를 전시기관에게 지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작품의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에 있어 제3조 제5항의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작품의 제공이 늦어져 결국 계약의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부터는 본 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조항에 따른 금전지급은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시기관은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3항에 따른 전시기관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작가의 작품 인도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전시기관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4항과 관련하여,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필수 제5조(작품의 보관) ① 전시기관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7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온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이 규정하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 제6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전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전시기관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② 전시기관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전시기관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2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작가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그 외의 이유로 인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작가가, 후자는 전시기관이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작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유에는 전시기관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 등이 있을 것이다.

필수 제7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그 종료일로부터 예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원칙적으로 전시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전시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전시기관이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8조(보험) ①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의 경우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통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수 제9조(작품의 저작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전시기관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기관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전시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전시기관이 작가의 허락 없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거나 작품을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항과 제3항에서 전시기관이 작가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의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전시기관이 작품의 사진이 게재된 수첩, 머그컵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4항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작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전시기관은 저작재산권자인 작가로부터 미술작품의 전시를 허락받았다. 한편 미술작품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는 그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제5항은 전시기관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다.

전시기관이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작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작품의 사진·영상 등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창작적 부분에 관하여는 전시기관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6항은 작가가 작품을 촬영한 사진·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시기관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¹⁾ 실제로는 작가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자신의 작품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전시기관에 대해 전시기관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전시기관은 이와 같은 사용에 동의할 것이다. 이 때 작가는 사진·영상을 사용하면서 전시기관을 해당 사진·영상의 저작권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필수 제10조(저작인격권 등) ① 전시기관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전시기관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가는 작품의 원본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통상 작품의 근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가 표시되는데, 제1항은 이러한 미술계의 관례를 반영하여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복제물 또는 작품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31) 본 계약의 당사자가 전시기관이므로 사진·영상의 저작권자 역시 전시기관일 것을 전제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진작가 등 전시기관이 아닌 제3자가 사진·영상의 저작권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작가는 그 제3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2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은 전시기관이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4항은 전시기관이 전시하기로 결정된 작품을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11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의 저작권은 수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작가는 물론이고 전시기관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전시계약의 성격상 당사자들이 제3자와의 사이에서 제기된 저작권침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 문제를 알리기만 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12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작가비 ○○○원과 사례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작가비의 ○○%인 ○○○원 및 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작가비의 ○○%인 ○○○원 및 사례비의 ○○%인 ○○○원 지급
3. 전시 종료일까지 작가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계좌주 : _____

제1항은 전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 운영 중인 [부록 1]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 시범적용(안)」을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규정하였다.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 시범적용(안)」에 의하면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작가비와 사례비로 나뉘는데, 작가비는 미술품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서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고, 사례비는 전시를 위해 새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기존 작품을 변형하는 데 대한 보수로서 지급된다. 작가비와 사례비를 산출하기 위한 산식은 구분되어 있다.

작가비는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계약 체결 시, 전시 시작 시, 전시 종료 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사례비는 작품 창작에 대한 보수이므로 계약 체결 시와 전시 시작 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작가와 전시기관의 협의에 따라 각 시기별 지급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작가비와 사례비 모두 계약 체결 시에 100%를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필수 제13조(제작비 등)** ① 전시기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상의 제작비 등 합계 금 〇〇〇원의 ㉠70%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 ②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최종 제출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제작비 등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과 제1항의 금 〇〇〇원 중 작은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 ④ 제1항과 전항의 금원은 전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1항에서는 계약 체결 시 지급하여야하는 제작비의 비율을 70%로 제시하였다.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을 미리 지급하여 원활하게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시를 위해 필요한 예상 제작비 중 일정 부분을 미리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전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제 투입된 제작비를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예상 제작비 중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정산자료 제출 기한 및 제작비 결정 시점은 당사자들의 협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필수 제14조(소유권 귀속)** 본 계약에 따라 새롭게 창작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 / 전시기관 에게 있다.

새롭게 창작된 작품의 소유권을 작가에게 귀속시킬지, 전시기관에 귀속시킬지, 아니면 작가와 전시기관의 공동소유로 할 것인지는 작가와 전시기관이 개별 사안별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의 소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전시기관이 소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 작가가 해당 전시기관의 소장을 원하는지 여부, 전시기관이 지급한 제작비가 실제 제작비에 근접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협의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시기관이 작가에게 지급하는 돈이 전시기관의 작품 소장을 정당화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시기관이 ‘미술창작 대가기준’에서 정한 작가비와 사례비를 모두 지급하고, 이에 더해 제작비도 100%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관이 작품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제1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제15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전시기관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³²⁾ 또는 기타 불가항력³³⁾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³⁴⁾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9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20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32)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33)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4)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³⁵⁾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21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2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5)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작 품 제 작 계 획 서

구분			상세항목	금액(원)	비고
작품명 (가제) []	제작비	재료비			
		인건비			
작품명 (가제) []	제작비	재료비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기타					
합계					

작 품 인 수 증

	작품명	제작 연도	재료	크기	발표 여부 ³⁶⁾	작품상태	비고
작 품 목 록							
보관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보관 조건	1. 2. 3. 4.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인수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_____님 귀하							

36) 발표 여부는 인수증 작성 시점에 작품이 전시, 아트페어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전시기획자 __ (이하 '전시기획자')와 __ 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이하 '전시기관')은 20__ . __ . 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기획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독립하여 활동하는 전시기획자가 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 등 비상업적 전시공간의 의뢰를 받거나 공모에 당선되는 등의 사유로 전시를 기획·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시기획자가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전시를 기획 및 진행하고, 전시기관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작품의 전시)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__ . __ . __. ~ 20__ . __ . __. / 오전 __시 __분 ~ 오후 __시 __분. 다만, 매주 __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_ 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
4. 전시내용 : _____
5. 전시유형 : _____

제1호 전시명에는 가급적 국문명과 영문명을 함께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3호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전시실' 등과 같이 세부적인 공간을 특정할 수 있다.

제4호 전시내용에는 전시의 주제,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호 전시유형에는 신작/구작 전시, 개인전/단체전 등과 같은 각 전시의 유형을 서술할 수 있다.

필수 제3조(전시의 기획 및 진행) ① 전시기획자는 전시주제의 선정, 작가의 섭외, 작품의 선정 등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전시를 기획·진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획자는 전시의 기획·진행에 있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행사에 전시기획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후 30일 내에 결산, 평가 등 전시 종료 후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시의 기획·진행에 관한 전시기획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해 둘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4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따라 전시기획자에게 사례비 〇〇〇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사례비의 〇〇%인 〇〇〇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사례비의 〇〇%인 〇〇〇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계좌주 : _____

제1항은 전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 운영 중인 [부록 1]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 시범적용(안)」을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규정하였다.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 시범적용(안)」에 의하면 전시기획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례비는 전시를 기획·구성하는 데 대한 보수로서 지급된다.

사례비는 전시 기획·구성에 대한 보수이므로 계약 체결 시와 전시 시작 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의 협의에 따라 각 시기별 지급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례비를 계약 체결 시에 100%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수 제5조(지식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후 〇년 동안 전시기획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시의 내용이 전시 당시 미술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사용하여 판매용 전시 도록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부수, 출판사,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을 별도 협의한다.

③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 정산비율 등을 별도 협의한다.

④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사용하여 비매용 전시 도록,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별도로 협의한다.

⑤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나 문제제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전시기획자가 전시를 기획·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에 관해 별도의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전시기획자가 작성한 글이 어문저작물로 인정되거나, 전시기획자가 제작한 표장이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 인정되거나, 전시기획자의 작품 선택·구성 및 배열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⁷⁾

전시기관이 전시기획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전시 도록을 제작·출판하거나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항과 제3항에서 전시기관이 전시기획자와 별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의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전시기획자의 산출물은 전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전시기획자는 물론이고 전시기관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자가 전시기획자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대로 제3자가 전시기획자의 산출물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6조(성명의 표시) ①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장소에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에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의 특성상 표시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는 전시기획자에게 성명표시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7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제1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37) 최근에는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계약은 전시기획자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전시기획자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시기획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9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³⁸⁾ 또는 기타 불가항력³⁹⁾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⁴⁰⁾을 정하여

38)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39)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1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2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⁴¹⁾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40)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41)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필수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대관계약서

작가 ____ (이하 '작가')와 임대인 ____ (이하 '임대인')은 20___. __. 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 전시공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작가가 전시공간을 대관하여 전시를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신진작가의 경우 대관전시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시공간 임대차에 따르는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이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작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임대인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의 전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필수 제3조(전시공간) 본 계약상 임대의 대상이 되는 전시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2. 면적 : ○○㎡

전시공간에서 전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사례에 따라서는 카페 등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컨대 벽면의 특정한 공간 등 작품이 설치될 구체적 위치를 특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필수 제4조(대관기간) 임대인은 20___. __. __.까지 전시공간을 작가에게 인도한다. 대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___. __. __.까지로 한다.

필수 제5조(작품의 전시) ①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___. __. __. ~ 20___. __. __.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전시공간의 휴관으로 전시를 하지 않는다.
3. 전시내용 : _____

② 작가는 전시기간 및 그 전후로 전시공간에서 예개막식,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일시, 행사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제2호의 전시기간은 제4조의 대관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만일 전시명이나 전시내용이 특별하지 않은 전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할 수도 있다.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시 전시 관련 부대행사의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3항은 전시시간 중 전시공간이 닫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6조(전시공간의 인도 등) ①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4조의 대관기간 이전이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회(회당 ○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전시공간에 전기, 조명, 수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바닥, 벽면, 천장에 작품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 인도 시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여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작가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위 문서를 작성하여 작가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라 임대인이 작가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교부한 경우, 작가는 그 문서가 전시공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한 문서의 원본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임대인은 작가에게 그 사본을 교부한다.

본 계약 체결 전에 전시 준비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전시공간에 대한 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답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답사를 하였더라도 전시 준비를 위하여 추가 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1항은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대관기간 이전이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하였다.

전시공간에 전기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벽면이 강도가 떨어지는 재질로 되어 있는 등 작품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2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전시에 적합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전시 준비를 위해 전시공간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3항은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전시공간의 인도 시점의 상태를 문서로 기록해 두면 해당 문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제4항과 제5항은 임대인이 전시공간 인도 시 작가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교부하고, 작가는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며, 양 당사자가 위 문서를 소지하도록 정하였다.

필수 제7조(대관에 대한 대가 등) ① 작가는 대관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총 〇〇〇원을 지급한다. 대관의 대가에는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등 관리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〇〇%인 〇〇〇원 지급
2. 전시공간 인도일인 20〇〇. 〇〇. 〇〇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〇〇%인 〇〇〇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차임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작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수 제8조(작품의 운송, 설치 및 관리) ① 작가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운송, 설치 및 관리한다.

② 작가는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린다.

가능하다면 작품의 특성에 따라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반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2항에서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란 다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전기 설비에 과부하를 발생시키거나, 큰 하중으로 인해 벽면 또는 천장에 복구가 어려운 훼손을 야기하는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필수 제9조(전시공간의 반환 및 원상회복) 작가는 대관기간 말일까지 작품을 철거하고, 전시공간을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는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필수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⁴²⁾ 또는 기타 불가항력⁴³⁾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⁴⁴⁾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42)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43)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4)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4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⁴⁵⁾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5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45)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작가 ____ (이하 '작가')와 모델 ____ (이하 '모델')은 20___. ___. ___.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모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작가와 미술작품의 모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와 모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작업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 내지 프로젝트명 : _____
2. 작업 일정 : 20___. ___. __. ~ 20___. ___. __.
3. 작업 기간 및 횟수 : 1개월당 ○회
4. 작업 시간 : 1일당 ○시간
5. 구체적인 작업 장소 및 환경
 - 가. 작업 장소 : _____
 - 나. 작업 환경(실내/야외 여부, 모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 _____
6. 노출 포함 여부 및 수위
 - 가. 노출 없음 ☐
 - 나. 노출 있음
 - 1) 수영복, 속옷 또는 그에 준하는 노출을 요하는 특수의상 착용 ☐
 - 2) 상체 일부 노출 ☐ (예상 노출 정도 : ○%)
 - 3) 하체 일부 노출 ☐ (예상 노출 정도 : ○%)
 - 4) 전신 노출 ☐
7. 작품 내용 중 성적 뉘앙스 내지 함의(sexual nuance or implications)를 포함하는 표현이 있음 ☐
8. 의상 및 소품 제공
 - 가. 전부 제공 ☐
 - 나. 일부 제공 ☐
 - 다. 제공하지 않음 ☐
9. 탈의실 및 대기실 제공
 - 가. 탈의실 제공 ☐
 - 나. 대기실 제공 ☐
 - 다. 제공하지 않음 ☐
10. 작가 외 제3자의 작업 참가
 - 가. 참가하지 않음 ☐
 - 나. 참가함 ☐ (예상 인원수 : ○명)

제2조는 모델 작업이 어떠한 일정과 장소 및 환경에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지금까지 모델의 작업 환경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점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작업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제6호 이하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사례 1 : 스포츠Q-미성년자에게 “다리 벌려라” 요구한 비공개 촬영회 실장.. 유출 압박까지】

18살 미성년자인 모델 지망생 A는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신촌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더니 빨간 조명에 이상한 속옷들이 잔뜩 있었다. 이어 바로 촬영이 진행되었는데 스튜디오 실장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다리를 벌리라고 요구했다. A는 두려움에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촬영 후에도 사진 유출이 우려해 항의할 수도 없었다.

【사례 2】

“촬영을 하다보면 노출의 수위가 심해지거나 사전에 협의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하는 사항들마저도 모두 구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이다보니 이에 대하여 나중에 항의하기도 어려웠다.”

필수 제3조(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기간) ① 작가는 모델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작품 내지 프로젝트의 작품집 및 관련 포스터, 스틸 사진,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
2.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등 ☐
3. 인터넷 및 SNS 등의 매체
 - 게시 대상 웹사이트 URL 주소 : https://
 - 게시 대상 SNS 매체 : 페이스북(Facebook) ☐ 인스타그램(Instagram) ☐ 기타 _____ (구체적으로 기재)

② 작가는 본 계약에 따른 작업 이후 ○년 동안 작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 작가는 위 기간이 경과하면 작업 결과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외적으로 작업 결과물이 노출 내지 공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전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이용 범위 및 대가에 관하여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작가가 이에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즉시 그 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공표된 내용의 삭제·폐기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작가는 모델의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특히 이용 매체와 기간에 대해 상세히 정해 둘 필요가 있는바, 제2조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작가가 합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만일 작가가 이를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작업 결과물의 이용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15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작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 1】

“촬영한 사진이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매체에 게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작가가 모델에게 전시를 위하여 촬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이를 책이나 잡지로 발간하거나, 상품 등에 부착하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 2】

“작가와 모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결과물의 사용 기간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년 전에 찍은 사진이 SNS 등을 통하여 게시되고 이를 통하여 작가가 수익 활동을 하기도 한다.”

【사례 3】

“오래 전에 작업한 결과물이 갑자기 SNS에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를 싫어하는 모델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모델도 있는데,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수 제4조(모델료 지급) ① 작가는 모델에게 작업에 대한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작업 종료와 동시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계좌주 : _____

③ 본 계약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모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는 모델료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델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작가와 모델 모두 작업에 대해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료와 잔금의 비율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모델료를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제3항은, 작가가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델의 동의 없이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모델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모델이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작가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모델이 이미 수행한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가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필수 제5조(작가의 일반적 의무) ① 작가는 모델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작가는 모델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작가 외에 제3자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제3자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작가는 모델을 위한 대기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실 및 탈의실이 마련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모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 ④ 작가는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모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작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에 모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작가는 작업 시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모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 ⑥ 작가는 모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에서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전에 고지된 작업을 완료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가와 모델은 상호 협의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⑧ 작가는 모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은 작가와 모델 사이에서만 체결되나,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진 동호회 촬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 작가는 제2항에 따라 작업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2조 각 호에 따른 작업의 내용과 범위 및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항은 작가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모델을 위한 대기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작업 장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기실 및 탈의실이 마련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모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델로 하여금 미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9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작가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모델은 제4항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 곧바로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이견을 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작가로부터 모델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델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사례 1】

“촬영 전에 ‘사전에 요구받지 않은 작업은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컨셉 변경 정도면 관촬을 수도 있지만, 아예 노출 수위 등이 크게 조정되는 경우도 꽤 있다.”

【사례 2】

“작가 한 분으로부터 작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는데 실제 작업은 여러 명의 촬영자와 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촬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3】

“촬영 장소에 갔을 때, 소규모 또는 상업적이지 않은 개인 작업 공간의 경우 그냥 모텔에서 촬영하거나, 야외인데 탈의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화장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나, ‘가려줄 테니 갈아 입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필수 제6조(모델의 일반적 의무) ① 모델은 본 계약상 정해진 작업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델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델은 작업에 적합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고지 받은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작가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모델은 작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전에 고지된 작업을 완료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모델과 작가는 상호 협의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⑥ 모델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델은 정해진 작업 일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작업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협의된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작가의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필수 제7조(모델의 제3자 동행 권리) ① 모델은 원하는 경우 작업 현장에 제3자와 동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모델과 동행한 제3자는 모델과 함께 모델의 본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작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당사자가 명확히 알고 있더라도, 막상 작업 현장에서 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현장 분위기 등의 이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 제3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델과 동행한 제3자는 모델과 함께 모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수 제8조(작업 결과의 확인) ① 모델은 작가에게 작업 현장에서 작업 결과의 확인을 즉시 요청할 수 있고,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모델은 작업 결과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그 폐기 내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항은, 모델이 작업 현장에서 작업 결과의 확인을 즉시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모델의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모델의 작업은 신체적 활동이라는 점, 누드 작업 등과 같이 모델의 내밀한 영역 내지

인격권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작업 결과에 관한 모델 스스로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은 모델에게 작업 결과에 대해 폐기 내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필수 제9조(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①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 모델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성명, 초상, 음성 등(이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작가는 작업 결과물에 포함된 모델의 초상 등을 본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 모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가는 사전에 합의된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작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델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그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데, 제1항은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사진 후보정 작업 등 작업 결과물의 통상적이고 부득이한 변경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항은 모델의 초상 등을 ‘본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형’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만 모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10조(작업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①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작가는 모델에게 지급한 모델료로 모델에 대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이용에 따른 수익 분배를 갈음한다.

모델이 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모델료는 모델이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수익 보장의 의미를 갖는 한편, 모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용 대가의 성격도 가진다. 제10조는 모델료가 모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분배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모델료에 작업 결과물로 인한 예상 수익이 반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제11조(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전2조에 규정된 권리를 비롯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필수 제12조(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① 작가는 작업 결과물을 합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모델의 사생활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작가는 모델의 사전 동의 없이 모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출을 포함한 모델 업무의 경우, 작가는 작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노출을 포함한 작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유출될 경우, 작가는 그로 인한 모델의 피해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 등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작가는 모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것이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3항은, 작가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제3자의 일탈 행위’라고 하더라도, 작업 현장 또는 작업 결과물과 관련한 상황에 있어서는 작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만일 일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작업과 관련하여’ 성범죄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사례】

“작업 현장은 각종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많은데, 모델, 작가, 그 외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개인의 일탈에 따라 몰카 촬영 등의 우려가 항상 존재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필수 제12조의2(아동·청소년 모델의 보호) ① 작가는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작가는 모델에 대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모델에 대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의2는 모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으로서,⁴⁶⁾ 작가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모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업계 관행을 고려하여, 비록 선진국의 사례와 같은 엄격한 서류 구비 요청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선정적인 표현을 제한하고 과도한 작업을 금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모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 하였다.

【사례 1 : 박석철-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영국 : 어린이·청소년 모델의 고용자가 공연 개시 21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청소년의 거주지 지방교육당국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신분과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14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 당국이 허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장의 의견서 제출 요구, 건강검진요구, 어린이·청소년 연기자가 개인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사의 인터뷰를 요구 할 수 있다.

46) 모델이 성년인 경우에는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프랑스 : 모델업무에 어린이·청소년을 고용할 경우도 16세 미만은 사전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가 불가할 경우 아동 고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전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인 신상 정보와 함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업무 리스트를 첨부해야 한다. 연기자 13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성적과 학교장의 허가가 포함된 서류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허가 심사의 결정은 허가 위원회(Comission des Enfants des Spectacle)에서 실시하는데 이 위원회에는 시장 또는 서기관, 아동재판소 재판장, 교육장, 지역 노동국장, 위생국장, 산업의사, 행정 담당 대리인 등이 참여한다.

【사례 2】

“술이나 화장품의 광고 사진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나이 제한 등이 필요하다.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모델에 대한 보호가 별도로 되지 않고 있다.”

필수 제13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

“노출 수위가 있는 촬영을 진행할 때 작가가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정해놓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다.”

【사례 2】

“모델의 신체를 품평한다든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필수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작가가 제5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작가가 합의되지 않은 작업을 요구할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 자체를 소급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다(민법 제550조). 따라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모델은 수령한 계약금 등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고 작가는 그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폐기하여야 하지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모델이 수령한 계약금 등 대가나 해지 시점까지 이루어진 작업 결과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종전에 이루어진 작업 부분까지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제15조는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가가 제5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델의 동의 없이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모델은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델이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제4조 제3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당사자는 천재지변⁴⁷⁾ 또는 기타 불가항력⁴⁸⁾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⁴⁹⁾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필수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47)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48)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6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7조(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작업 이후 및 작업 결과물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18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⁴⁹⁾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9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49)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50)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작가 ____ (이하 '작가')와 [그의 대리인 ____ (이하 '대리인') 및] 건축주 ____ (이하 '건축주')는 20___. ___. ___. 아래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작·설치에 있어서 작가와 건축주 간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이다. 건축주는 작가에게 미술작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작가는 그에 따라 미술작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 것이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의 일부 내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대리인 및 건축주 3자 간 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의 제작 의뢰, 설치 및 전시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건축물의 개요) 본 계약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건축물명 : _____
2. 위치 : _____
3. 예상 준공일 : 20___. ___. __.

제3조(미술작품의 개요) ① 작가가 제작·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명칭 : _____
2. 종류
가. 조형예술물
☐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벽화 ☐ 미디어아트
☐ 기타(_____)
나. 공공조형물
☐ 분수대 ☐ 기념탑·기념비 ☐ 동상 ☐ 폭포 ☐ 기타(_____)

3. 제작·설치 기간 : 20___. ___. __. ~ 20___. ___. __.

다만, 관계기관의 미술작품 심의 일정 등으로 제작 및 설치 시점이 달라질 경우 협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설치 위치 : (건축물 또는 부지 내의 위치를 특정)

5. 내용 :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 별첨

② 전항 제5호에 따라 별첨하는 내역서 내지 설계서에는 제작방법, 재료, 크기, 상세 위치 및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는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명칭, 종류, 제작 및 설치 기간, 설치 위치 등을 정하여 작품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1항 제5호는 작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은 작품의 내용을 특정하고 실제 구체적인 제작·설치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제2항은 미술작품의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에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반드시 포함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재료비, 설치비, 대리인 지급 대가 등의 구체적인 비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조(건축주의 계약 대가 지급) ① 건축주는 작가에게 창작비, 제작비, 설치비, 간접경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금 〇〇〇원을 아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10% 인 〇〇〇원 지급

2. 계약 체결 후 심의 통과 시 중도금으로 총액의 ㉮40% 인 〇〇〇원 지급

3. 제8조 제1항에 따른 설치 승인 후 〇일 이내에 잔금으로 총액의 ㉮50% 인 〇〇〇원 지급

② 건축주는 전항 제3호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작가에게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전항의 요구에 따른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조는 건축주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 대금의 10%를, 심의 통과 시 중도금으로 총 대금의 40%를, 제작 및 설치 완료 후 잔금으로 총 대금의 50%를 각각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제시하였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잔금의 경우 지급 요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 작가는 관련 자료를 건축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조(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① 건축주는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작가는 건축주가 심의를 받을 때 협조하여야 한다.

②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작가는 건축주와의 협의 하에 지체 없이 기존 심의안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부과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를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미술작품 설치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의무 주체는 건축주이지만, 실제로 심의 절차가 이루어질 때에는 작가가 이에 협조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작가의 협조 의무를 함께 규정하였다.

제6조(미술작품의 제작)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심의 완료 후 제작 착수 전 심의 통과안에 부합하게 형태, 크기, 재료 등이 명기된 설계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제작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제작 도서를 확정한다.

- ④ 작가는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전항에 따른 제작 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미술작품의 규격과 형태 등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변경할 수 있다.
- ⑥ 전항의 수정·변경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① 작가는 미술작품의 제작 완료 후 건축주의 사전 검수를 거쳐 현장에 지정된 설치 위치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 운송 보험 가입 등 제반 사항은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② 작가는 미술작품의 설치 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작품 설치를 위한 바닥 구조물 등의 시공 내용을 확인한다.

③ 건축주는 심의안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작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은 미술작품의 제작 이후 설치에 이르기까지 운송 보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 제작,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작가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제2항에 따라 작가는 미술작품을 설치 전에 작품 설치를 위한 바닥 구조물 등의 시공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제3조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비롯한 지반 기초공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작가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 승인 및 확인) ① 작가는 미술작품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건축주로부터 미술작품 설치 완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작가는 미술작품 설치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설치 완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작가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한 후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한편 건축주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등 건축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9조(미술작품의 유지·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해당 미술작품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은 미술작품이 훼손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원 저작자인 작가에게 요청하여 이를 보수하도록 정하였다. 다만 작가를 통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대체 인력 등을 통하여 보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그와 같은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미술작품이 설치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예술작품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작가가 미술작품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일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 계약은 작가와 건축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소유권이 건축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작가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본 계약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본 계약상 ‘일몰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는 “관리기관의 장은 미술작품이 철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⁵¹⁾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법률관계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로 규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사례 1 : SBS뉴스- [취재파일] 공공미술은 어떻게 ‘도심 흉물’이 됐나】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건물 앞에 사람 키 보다 큰 조형물이 하나 있다. 주변엔 담배꽂초와 캔이 굴러다니고 표면엔 때가 들러붙어 있다. 광고지가 붙었던 테이프 흔적도 많다. 조형물을 가리켜 주변 상인들은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다. 노숙자들이 오줌 뉘서 지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야말로 애물단지”라고 말한다. 그들 말처럼, 조형물에 다가가니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동대문구 다른 상가건물 앞에도 5m 50cm 높이 조형물이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뾰족 솟아오른 주 조형물 주위로 둥근 공 모양 부속품이 3개 있다. 원래는 4개여야 하지만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나갔다. 그 흔적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서대문구 한 건물 앞 ‘책 읽는 사람’을 형상화한 조형물의 ‘책’엔 보기 민망한 낙서가 가득했다.

【사례 2】

“Y대학교가 소유한 작품의 도장이 벗겨져서 작품을 제작한 작가에게 도색을 요청하였다. 해당 작품의 도장은 ‘법랑’으로 된 것이었는데, 작가는 그 도장 작업을 하려면 특정 일본 업체를 통하여야 하며 그 경우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Y대학교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 하여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수소문하여 8천만 원에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정 국내 업체를 찾았다.”

【사례 3】

“설치 이후 미술작품에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비용으로 보수를 진행한다. 차가 스치고 지나가 미술작품의 도색이 벗겨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작가에게 보여주자 작가가 직접 보수를 진행하였고 건축주가 경비를 부담한 경우가 있다.”

제10조(지체상금)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될 경우 1일당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건축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제작기간 내에 미술작품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되는 경우 작가가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지체상금률은 당사자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데, 참고로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⁵¹⁾ 제75조에서는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을 1천분의 0.5(0.05%)로 정하고 있다.

제11조(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① 작가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가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축주는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③ 작가는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미술작품의 제작, 설치 후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제12조(미술작품의 소유권 귀속) ① 미술작품의 소유권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잔금 지급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이전된다.
② 작가는 본 계약상의 미술작품과 동일한 미술작품을 설치 위치 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및 승인 후 동일한 컨셉(concept)의 연작·에디션(edition)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제13조와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미술작품의 저작권 귀속) ①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로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홍보 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술작품의 복제물을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작가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5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2) 2018. 12. 4. 기획재정부령 제6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물을 ‘원본’, 즉 미술작품을 개·변조 내지 변형하지 않은 그 자체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35조), 건축주는 본 계약상 미술작품의 설치로 인하여 미술작품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2항에서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다만 미술작품의 복제물을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미술작품의 소유권 이전으로써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제3항 단서에서 작가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제14조(미술작품의 저작권격권) ① 건축주는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술작품과 근접한 위치에 작품명, 작가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설치장소의 변경, 작품 자체의 수정·변경 등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작가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제작 도서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하도급·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하도급·위임 범위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은 작가가 실제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정하였다.

제16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이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따른 제작, 설치 기간 중 건축물 공사 중단 등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건축주가 이를 해지하여야 할 경우, 미술작품이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건축주와 작가 간에 협의하여 정산 및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심의 등을 포함하여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작가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⁵³⁾ 또는 기타 불가항력⁵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⁵⁵⁾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축 공사의 경우 미술작품이 아닌 건축 공사 자체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해지와 달리 제4항을 두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가 본 계약을 해지하되 미술작품이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6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3)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54)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5)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등) 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전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작가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의 '심의 준비비' 중 세금계산서, 영수증 기타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회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작가는 심의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 비용 내에서는 이를 보전받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작가가 보전받는 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2항은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에 따르되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정하되, 작가가 '심의 준비비'를 초과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9조(이면 합의 금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이면, 부속,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약', '합의', '약정', '협약', '양해각서'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와 같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

종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법률관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19조는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본 계약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특히 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기부하는 등의 내용을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가는 약정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무가 없다.

제19조는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는 외에도 건축주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작가에게 금전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이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배임 또는 강요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 동아일보-아파트 미술품 값 후려친 부영】

P 조각가는 2012년 ‘부영’으로부터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 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참여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부영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 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당선작은 당초 공모 금액인 2억 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하였는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 후 부영에서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영건설은 각서를 회수해 간 후 당초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만을 P 조각가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 가량 부족했는데, P 조각가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제20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⁵⁶⁾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제21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56)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선택 제23조(대리인의 선정 및 대가 지급) ① 작가는 본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성명 : _____
2. 주민등록번호 : _____
3. 주소 : _____
4. 연락처 : _____

② 작가는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대리인에게 위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는 작가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의 일부 내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다.⁵⁷⁾ 대리인은 화랑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지정한 개인 에이전트 등이 될 수도 있다. 본조는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며, 만일 대리인을 선정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대리인도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선택 제24조(대리인의 권한) 작가는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작가와 건축주 간의 작품 기획, 제작에 관한 업무
 - 가.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미술작품의 종류, 제작·설치 기간, 설치 위치’ 등에 관한 협의 및 조율 ☐
 - 나.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 ‘설치 비용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 준비 ☐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에 필요한 업무
 - 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협조 ☐
 - 나. 제5조 제2항, 제6조 제6항,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협조 ☐
3.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제반 절차상 업무
 - 가. 제4조에서 정한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전달 ☐
 - 나. 제6조에서 정한 제작 도서 준비 및 제출 ☐
 - 다. 제7조에서 정한 설치에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 운송 보험 관련 업무 ☐
 - 라. 제9조에서 정한 관리 매뉴얼 제공 ☐
 - 마. 제11조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계약의 각 체결 및 증권 제출 업무 ☐
 - 바. 그 밖에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절차상의 업무 ☐

제24조는 작가가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57)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작가와 건축주 사이에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이하를 삭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선택 제25조(대리인의 의무) ① 대리인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이면, 부속,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약’, ‘합의’, ‘약정’, ‘협약’, ‘양해각서’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와 같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사법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별도 합의의 체결 당사자 및 별도 합의를 실제로 이행한 자는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창작비 (Artist Fee) ⁵⁸⁾	작가비			
	사례비			
제작비 ⁵⁹⁾	재료비			
	인건비			
설치비 ⁶⁰⁾	작품 운송비			
	현장 설치비			
	기초구조물 및 부대공사비			
대리인 지급 대가 ⁶¹⁾	대행수수료			
행정비용 ⁶²⁾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⁶³⁾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비+제작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⁶⁴⁾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비용			
합계			(100%)	

58) '창작비'는 전시에 대한 보수인 '작가비'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소요되는 보수인 '사례비'를 포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59) '제작비'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등을 통한 '인건비'를 포함하며, 재료비 항목은 필요한 경우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60) '설치비'는 '작품 운송비', '현장 설치비', 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부대공사비'를 포함한다.

61) '대리인 지급 대가'는 작가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

62)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63)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정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64)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 2019년 시범적용(안)은 참고사항이며, 각 전시기관의 자체 기준으로 지급해도 관계없음

□ 작가비

- (개념)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

* 근거 :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에 따라 지급

- (산출산식) 1일 기준금액×전시일수×작가별 배분율×조정계수

구분	작가비 산출산식
작가	1일 기준금액(5만원*)×전시일수×작가별 배분율**×조정계수*** * 1일 기준금액 = 1일 평균매출액 x 사용요율 ** 작가별 배분율 = 1 / 참여 작가 수 *** 조정계수(0.7~1.0)는 전시에안, 반복출품가능성 등에 따라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 1일 기준금액 산출근거

1일 기준금액 산출을 위한 (전시회당) 1일 평균매출액(유료기준)은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2016년 기준)에서 제시된 수치를 대입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1,223,376원이 산출되며, 이에 약 4.1%의 사용요율을 적용하면 1일 저작권사용료 기준금액은 5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적용대상)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사례비

- (개념)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 기획, 평론과 관련한 것에 대한 보수. 작가, 기획자, 평론가에게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제작비 별도)

- (산출산식) 사례비 = 시간 기준금액×창작시간×전시유형×조정계수

구분	사례비 산출산식
작가 전시기획자 평론가	시간 기준금액(15,778원*)×창작시간**×전시유형***×조정계수**** * 학술용역인건비에 연동. 경력에 따라 1.0~1.8배 범위에서 전시기획자가 조정 가능 ** 창작시간은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작가와 협의하여 결정 ***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0.7), 40인 초과(0.6). 전시기획자가 조정 가능 **** 조정계수(0.7~1.0)는 전시에안, 반복출품가능성 등에 따라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 20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연구보조원 인건비(참여율 100%)를 월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 (적용대상) 신작, 구작변형으로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 창작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연구

법무법인 세종

본 해설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가칭)알기 쉬운 미술 계약”이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